

영국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의 성립과 향후전망

박 영 도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머리말

영국에서의 규제개혁에 관한 최초의 법적 기반은 1994년의 ‘규제완화 및 외주화법(Deregulation and Contracting Out Act 1994 : DCOA)’이다. 동법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무장관이 판단한 경우 의회에 대하여 그 개정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법령개폐를 기다리지 않고 부당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배제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즉, 법률에 의하여 기업 기타에게 부과된 부담을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명령(Order)으로 그 법률의 개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였다. 종래 제정법을 개폐하는 데에는 별도의 제정법에 의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헨리 8세 조항(Henry VIII powers)’이라고

부르는 위임규정 즉, 그 법률의 개폐를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을 그 법률 가운데 있는 법률만이었다. 이 의미에서 동 법률은 주목되는 법률이었다. 규제완화명령을 발하는 장관의 권한에 대하여는 안전장치가 설정되어 ① 규제완화명령에 벌칙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정하고, 강제적인 출입, 검사 또는 조사를 행하거나 증거제출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하며, ② 제안된 명령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의견을 장관이 고려하며, 나아가 의회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되는 때에 관계자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③ 제안된 명령에 대하여 의회가 60일 동안 심사를 행하도록 하였다.¹⁾ 그러나 동법은 규제철폐 이외에 다른 선택방안이 없고 필요한 사회적 규제일지라도 과도하거나 부당한

1) 동 법률의 시행이후 48회의 규제완화명령(Regulatory Reform Order)이 발동되었다. 예를 들면, 조합비의 급료로부터의 원천징수허가를 3년마다 하도록 한 것, 등기소의 예약을 3월에서 12월전으로 확대한 것 등이다. 이 규제완화명령은 그 대상범위가 한정되어 비교적 적은 문제에서 활용되었다.

규제일 경우 적절한 사안처리가 곤란하였다.

그 후 1998년 블레이어정부는 증거에 의거한 실효성이 높은 정책입안을 지향하기 위하여 수상 성명으로 일련의 규제개혁정책을 정치주도로 실시하였으며, 1999년 3월에 ‘정부현대화(Moder-nizing Govern-ment)’ 정책²⁾이 본격화되어 기업 등에 불필요한 규제의 배제와 정부의 현대화라는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규제영향평가제도 (Regulatory Impact Assess-ment)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일련의 규제개혁정책을 법제화하는 한편 필요한 사회적 규제를 배려하고 부당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배제에 대한 주무장관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강화하여 기동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2001년 규제개혁법(Regulatory Reform Act 2001)’을 마련하였다. 동 법률은 우선 규제완화를 명령할 수 있는 장관의 권한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대폭 확대하였다.

- ① 명령규정을 만들어 재제정할 수 있도록 한 점,
- ② 추가적 부담을 부과하는 점,
- ③ 명령이 다른 부담을 경감 또는 제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정법에 있어서 비정합 및 변칙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 ④ 법령의 결여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담을 취

급하는 점,

- ⑤ 명령이 제정되어 적어도 2년 이상 경과하고 그 동안에 실질적 부분이 개정되지 않은 제정법에 적용되는 점,
- ⑥ 장관이나 부처를 포함 그 자가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라도 부담을 제거할 수 있는 점,
- ⑦ 사무상 또는 상세한 부분에 관하여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결절차에 따라 종속규정 명령으로 개정을 인정한 점 등이다.

이러한 명령권한의 범위가 확대되어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정장치와 심사제도가 강화되었다. 종래의 안전장치로서 ‘필요적 보호테스트(necessary protection test)’가 있으며 건강, 생명, 안전 등에 저촉하지 않을 것이 조건으로 되었다. 동 법률은 이에 추가하여 기존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의 계속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명령이 그 행사를 방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기대테스트(reasonable expectations test)’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또한 명령이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결과로서 얻어지는 이익에 상응하는 ‘비례배분원칙(proportionate)’, 공익과 개인의 권리의 ‘공정한 발린스(fair balance)’, 다른 자의 부담의 경감과 이익의 증가가 된다는 ‘바람직함(desirable)’이라

2) 정부현대화정책의 골자는 ① 정책입안에서의 전략적이고 부처간·민관연대에 의한 복합적 계획의 실현, ② 공적서비스제공책임으로서 이용자의 요구에 합치한 서비스 제공, ③ 공적서비스의 절추구로서 효율적으로 고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④ IT정부의 실현으로서 공적서비스에의 적극적인 신기술도입, ⑤ 공적서비스의 중시로서 시민지향적인 서비스의 혁신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는 엄격한 테스트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테스트에 추가하여 유럽인권조약에의 적합성에 관한 장관표명, 규제영향평가라는 안전장치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규제개혁절차도 강화하여 과잉규제에 대하여는,

- ① 소관장관이 공개협의회(extensive public consultation)를 개최하여 심의를 개시하고, 그것이 가결된 경우에 소관장관은 규제수정안(proposals for Orders)을 의회에 회부한다.
- ② 의회에서는 각원의 심의회(scrutiny)에서 심의를 개시하여 장관이 제출한 규제수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경우에는 규제수정안(Regulatory Reform Order)이 성립하고, 의회의 심의회가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소관장관은 규제수정안을 철회하거나 또는 수정한 후에 다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법률은 규제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종래 사용되었던 절차에 추가하여 새로이 규제 집행실무규정(Code of Practice)을 제정하는 권한을 장관에게 인정하였다. 이것은 불합리한 규제의 집행을 방지하는 역할을 거둔다.³⁾ 한편 동

법률에서는 동법시행이전의 기존규제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법률 및 하위법령도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원입법에 대하여도 규제영향평가의 실시를 권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2005년 7월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의 선진규제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에서는 '2001년 규제개혁법'의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⁴⁾ 이 보고서는 동 법률의 성립시에 정부공약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05년 3월까지 60종의 규제개혁명령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보고서발표 시점까지 실제로 제정된 규제개혁명령은 27건에 그치고, 보고서는 규제개혁이라는 목적의 달성도가 예상외로 저조하고 실행된 개혁수도 적고 법률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2001년 규제개혁법의 문제점으로서 다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① 법률의 목적이 명확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 적용이 규제개혁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보다는 법률의 기술적 세부사항의 시정에 편중되고 있다.
- ② 부담(burden)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고 실제

3) 이 법률에 앞서 이미 규제의 집행에 관한 개혁이 진행되었다. 규제를 행하는 자와 규제를 받는자와의 협력을 기본으로 하여 기업경영자, 자원봉사단체, 소비자 및 행정에 의한 협회가 거듭되어 집행협정이 체결되었다. 집행협정은 집행직원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기술한 것이다. 중앙 및 지방의 집행기관은 집행협정의 원칙 및 절차에 자발적으로 따르게 된다.

4) Better Regulation Executive, Review of the Regulatory Reform Act 2001.

의 적용이 어렵다. 행정상의 시간, 입법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③ 부담경감 이외의 법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의 명확화 또는 간소화를 위한 문언의 수정을 할 수 없다.
- ④ common law에 영향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로부터의 권고에 의거한 규제개혁명령에 의한 시행이 제한된다.
- ⑤ 장관 및 각부처의 부담만을 경감하는 규제개혁명령은 제정할 수 없으므로 공공서비스의 효율화의 개혁에 공헌하지 않는다.
- ⑥ 제정으로부터 2년 이내의 법률을 개정할 수 없다는 제한에 의하여 규제개혁명령권한의 운용이 과도하게 방해받고 있다.
- ⑦ 위임입법제정권을 부여하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세부에 걸친 유연한 규정을 정할 수 없으므로 대규모의 개혁실행이 곤란하게 된다.
- ⑧ 승인 결의전에 오랜 시기를 요하나 규제개혁명령의 제정절차로서 일률적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제정절차의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다.

보고서발표와 같은 날 정부는 공개협의서인 '선진규제를 위한 법안(A Bill for Better Regulation)'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 ① 입법을 간소화하고 논의의 여지가 없는 법률위원회의 권고를 실행하기 위하여 규제개혁명령에 의하여 제1차적 입법을 개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2001년법에 규정된 부담의 제거, 삭제, 재시행 또는 부과를 위한 개정권한에 관하여는 종래대로 한다).
- ② 장관 및 부처의 부담만을 경감하는 규제개혁명령을 제정할 수 없다는 제한을 철폐한다.
- ③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위원회의 권고를 실행하기 위한 Common law를 개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④ 성립 또는 개정 후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정법이라도 개정가능하도록 한다.
- ⑤ 규제개혁명령으로 새로운 위임입법을 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권고를 하고, 이에 대한 관계자 및 일반인의 의견을 모집하였다. 이에 덧붙여 공개협의서는 모든 규제개혁명령에 60일의 기한을 본인 긍정적 결의 절차를 적용할 것인지여부에 관하여도 관계자 및 일반인의 의견을 구하였다.

그 후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의견을 수렴하여 2001년 규제개혁법의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2006년 11월 '입법 및 규제개혁법(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이 성립되어 200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II.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의 개요

이 법률은 전체 4장, 39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명령제정권(Order-making powers)

각부장관(A Minister of the Crown)은 다음의 두 가지 종류의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 ① 부담의 제거(remove) 또는 경감(reduce)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이다. 부담(burden)이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재정적 부담, 행정상 불편, 효율성·생산성 또는 수익성에 대한 장애 또는 합법적 활동의 지속을 방해하는 형사상 또는 기타 제재를 말한다. 이 명령에는 i) 지정된 모든 기능을 폐지, 부여, 이관 또는 위임하는 것을 정하는 규정, ii) 기관 또는 공직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규정, iii) 제정법(제1차적입법 및 하위입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받은 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② 규제원칙을 촉진(promote)하는 명령이다. 규제원칙(regulatory principle)이란 규제활동이 투명성이 있고 책임소재가 명확하며 목적과의 균형이 도모되어 또한 일관성이 있는 모습으로 수행되거나 규제활동이 필요로 하는 사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 명령은 i) 규제기능의 수행형태를 수정하는 규정, ii) 제정법에 의하여 또는 제정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규제기능을 행사하

는 기관의 규약(constitution)을 개정하는 규정, iii) 규제기능을 이관 또는 위임하는 것을 정하는 규정, iv) 제정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받은 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위의 두 가지 종류의 어느 명령도 각부장관, 제정법에 의하여 기능을 부여받거나 이관 받은 자 또는 명령에 의하여 창설된 기관 또는 공직보유자에게 위임입법을 정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 명령을 제정하는 조건

각부장관은 다음의 6가지 조건 중 필요한 것이 충족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을 개정하거나 권고를 시행하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 ① 법적인 수단에 의거하지 아니하고는 문제해결의 방법이 없을 것,
- ② 명령에 정해진 효력이 정책목적과 부합하고 있을 것,
- ③ 명령의 규정이 전체적으로 공익과 명령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의 이익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할 것,
- ④ 명령의 규정이 필요한 보호를 제거하지 않을 것,
- ⑤ 명령의 규정이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유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
- ⑥ 규정이 헌법상의 의미(constitutional signifi-

cance)를 가지지 않을 것 등이다.

또한 법률의 표현을 바꾸거나 범규범을 성문화하는 명령은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경우 이외에는 정해서는 아니된다.

3. 명령에 부과되는 제한

명령은 기존법률의 문언을 수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을 규정할 수 없다.

- ① 신규의 과세 또는 증세를 정하는 것,
- ② 정식기소에 의거한 유죄선고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을 과하는 범죄를 규정하는 것,
- ③ 약식기소의 유죄선고에 의하여 1년(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는 6월)을 초과하는 구금형 및 5,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벌금을 과하는 범죄를 규정하는 것,
- ④ 출입조사 및 증언을 강제하는 권한을 정하는 것,
- ⑤ 이 법률의 제1장 및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을 개정하는 것.

4. 명령을 정하는 절차

(1) 협의

명령의 제정을 제안하기에 앞서 각부장관은 다음의 자와 협의(Consultation)하도록 하고 있다.

- ① 명령의 제정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단체,

- ② 명령의 제정으로 영향을 받는 법정기관(statutory body) 또는 이들 기관의 대표,
- ③ 제안이 Wales내에서 또는 Wales에 관계되어 적용되고 또한 Wales국민의회가 기능을 행사하는 사항에 관계하는 한에서 동 의회(Assembly),
- ④ 필요에 따라 법률위원회, Scottish Law Commission, Northern Ireland Law Commission 등이다.

(2) 초안 및 설명문서의 의회제출

각부장관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수정을 거쳐 안을 확정하여 의회에 명령초안(Draft of the order) 및 설명문서(explanatory document)를 제출한다. 설명문서는 명령의 근거가 되는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의 규정, 명령의 제출이유 등을 설명하고 동 명령초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절차를 권고한다.

(3) 의회승인절차

위임입법에 대한 의회제출제도(Laying before the Parliament)는 영국특유의 위임입법 통제제도라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위임입법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일반적인 법률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임입법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수권법률이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서 국회에의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는가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으나, 대체로 70% 내지 80%의

비교적 높은 비율로 제출된다고 한다. 법률이 위임입법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는 1946년의 Statutory Instrument Act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행해진다.

한편 명령초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절차는 ① 부인결의절차(negative resolution procedure),⁵⁾ ② 승인결의절차(affirmative resolution procedure),⁶⁾ ③ 특별승인결의절차(super-affirmative resolution)⁷⁾가 있으며, 위 설명문서에는 어느 절차로서 명령을 제정할 것인지를 권고한다. 부인결의절차나 승인결의절차 어느 경우에도 상원 또는 하원이 명령초안 및 설명문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승인결의절차의 채용을 신청하지 않는 한 권고된 절차가 채용되어, 상기제출일

로부터 40일 이내에 의결이 행해진다. 또한 명령초안에 관하여 보고할 책무를 부담한 상원 또는 하원의 위원회가 30일의 기간종결 후 40일의 기간이 종결하기까지의 사이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그 권고가 당해 의원에서 부결되지 않은 경우 명령을 정할 수 없다.

특별승인결의절차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특별승인결의절차가 채용된다. 각부 장관은 명령초안 및 설명문서제출로부터 60일 동안 진술, 상원 또는 하원의 결의, 명령초안에 관하여 보고할 책무를 진 상원 또는 하원의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후 의결이 행해진다. 진술이 있는 경우 그 진술은 60일의 기간종료 후에 성명형식(statement)으로 공개된다. 성명에 의한 공개와 의결간에 명

5) 부인결의절차란 제정법이 일정한 기간을 한정하여 위임입법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제정된 위임입법은 의회에 제출되어 바로 시행되나, 제출후 40일 이내에 상원 또는 하원의 어느 한곳이나 하원이 취소의 결의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해제조건 부라고 할 수 있으며 40일이 경과하면 위임입법의 효력은 확정된다. 취소의 결의를 구하는 동의를 청원(prayer)이라 하며 모든 의원이 할 수 있다. 취소의 결의가 성립하면, 즉 40일내에 당해위임입법을 폐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국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의의 취지에 따라서 Order in Council이 제정되어 당해 위임입법은 폐기된다. 이리하여 폐기된 것은 “부인결의(negative resolution)”에 의한 폐안이라고 한다.

6) 승인결의절차란 제정법중에는 제시된 위임입법에 관하여 국회가 일정기간내에 적극적으로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당해 위임입법은 소멸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있다. 또한 제정법은 제시된 위임입법에 관하여 양원의 결의를 요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있으며, 하원에게만 결의를 요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있다. 또한 위임입법은 국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제정법도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에 제시하여 4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당해 위임입법을 근거로 행동하여도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은 행정기관에서 정립됨과 동시에 효력을 취득한다. 제시된 위임입법에 대하여 국회가 40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위임입법을 근거로 행동하여도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승인결의절차(affirmative resolution procedure)는 일종의 정지조건부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첫째, 위임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위임입법이 시행되기에는 각원의 승인결의를 요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위임입법은 승인결의가 행해지기까지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통제의 정도가 가장 높다. 둘째, 위임입법은 제출됨과 동시에 시행되나 일정기간경과후의 효력이 승인결의와 관련되는 경우이다. 즉 과세의 경우와 같이 신속한 사항을 필요로 하며 확고한 국가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된다. 예컨대 위임입법이 28일 이내에 각원의 승인결의가 없으면 28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는 것이다. 셋째, 위임입법의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각원의 승인결의가 있기까지는 위임입법을 제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7) 이 절차는 2001년 규제개혁법에 새로이 도입된 절차로서 승인결의절차에서 규정한 기간이 40일에서 60일로 된 것의에는 승인결의절차와 거의 유사하다.

령초안에 관하여 보고할 책무를 지는 상원 또는 하원의 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그 권고가 당해 의원에서 부결되지 않은 경우 명령을 제정할 수 없다.

각부장관은 60일의 기간이 종료 한 후 명령초안에 개정을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정한 명령초안, 그간의 진술 및 개정부분에 관한 성명을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로부터 의결간에 명령초안에 관하여 보고할 책무를 지는 상원 또는 하원의 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그 권고가 당해 의원에서 부결되지 않은 경우 명령을 제정할 수 없다.

5. 규제기관

이 부분은 2005년에 발표된 보고서 ‘행정의 부담경감 : 효과적 심사 및 집행’의 권고를 법제화한 것이며, 리스크대응형의 현재실무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은 규제집행에 관하여 투명성(Transparent), 책임성(accountable), 비례성(proportionate) 및 일관성(consistent)을 제시하는 한편 규제활동은 필요로 하는 사례에 한하여 적용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부장관은 이 원칙에 의거하여 규제집행의 실무규정(Code of Practice)을 정하여야 하며, 실무규정은 의회 각원의 결의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다. 규제기관은 규제집행에 즈음하여 실무규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규제기관에 의한 실무규정에 대한 위반은 규제위반의 소송에서 위반자에게 형벌을 과하는 때의 경감사유가 될 수

있다. 각부장관은 명령으로 실무규정의 대상이 되는 규제기능을 행사하는 규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가스전력시장감독국(Gas and Electricity Authority), 통신청(Office of Communications), 철도규제청(Office of Rail Regulation), 우편서비스위원회(Postal Services Commission), 수도서비스규제청(Water Services Regulation Authority)에 부여된 규제기능에 관하여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

Ⅲ. 평가와 전망

‘2001년 규제개혁법’에서는 규제개혁명령(Regulatory Reform Order)이라는 위임입법(statutory instrument)으로 제정법을 개정할 수 있는 개정권한(reformative power)을 부여하여 행정부에 의한 권력남용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당초의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 초안은 이러한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안되었다.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억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구조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문헌법전이 있는 국가에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한 국가권한의 이행으로서 규제완화의 탈을 쓴 독재법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안의 심의에 즈음하여 하원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근래 가장 헌법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법안’으로서 평가하였으나, 행정권한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의회내외에서는 동 법률안을 ‘의회폐지 법안’, ‘모든 법안을 종식시키는 법안’으로 비판

하였다.

그리하여 의회 심의단계에서 수정을 거쳐 동 법률에서 정한 명령에 대하여 그 제정은 부담의 제거나 경감 및 규제원칙의 촉진이라는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전제조건으로서 헌법상 의의를 가지는 규정을 정하지 않을 것 및 이 법률 자체와 인권법을 개정할 수 없도록 한 것 등의 제약을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 수정으로 그동안의 비판이 완화되지는 않았으나, 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영국의 헌법제도와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권력이 의회·정당으로부터 행정부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도 수상에게 편중되고 집중되는 가운데 의회에 의한 억제와 균형의 기능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 법안의 배경으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또한 헌법이 복수의 문서 및 관습에 의하여 구성되어 그 구조가 난해하여 의회주권의 원리에 따라 제정법으로 헌법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점을 둘러싸고 성문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다. 여하튼 헌법구조에 관한 논의는 단시일 내에 결론이 내려질 수는 없으나, 이번의 법률과 같은 권력분립의 근본에 관련한 규정이 보통 법률로서 제출, 심의되는 유연성 내지 위험성은 여전히 영국의 헌법체제 중에 내포되어 있다.